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3. 5. 12.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청소년시설의 설치 확대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청소년시설 통합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 업무
(안 제1조~제4조)

나. 운영 및 위탁, 운영시간과 휴관일(안 제5조~제6조)

다. 사용대상, 사용신청 등, 사용제한, 사용취소 및 중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성별영향평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617호

가) 예고기간: 2023. 4. 10. ~ 2023. 5. 1.(21일간)

나) 예고결과: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한다.
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고성군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수련종목의 개발 및 수련 활동 지원
4. 청소년 교육·상담·정서함양
5.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6.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이용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용시설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
4. 취미·문화·학습 등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대상)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취소 및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승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④ 사용료 등의 면제·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

■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시설유형		시설명	위 치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61
	청소년 문화의 집	고성동부청소년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5
청소년이용시설		고성하이청소년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기준(제11조 관련)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청소년	일 반	
실내집회장 (1층)	○ 전시, 공연, 기타 행사(1회 2시간) - 영상장비, 음향 장비 사용	무료	20,000	※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 퍼센트 가산 징수
	○ 냉·난방시설 (1회 2시간)	무료	20,000	
동아리방, 프로그램실 (2, 3층)	1회 2시간	무료	20,000	
노래·댄스·밴드 연습실, 체육활동실	1회 2시간	무료	2,000	

청소년수련관 수강료

구 분	대 상	기준	금액	비고
과목당	청소년	월	무료	※ 프로그램에 따라 재료비 등 실비 별도 부담
	일 반	월	50,000원 이내	

※ 수강료는 교육 난이도, 주 강좌 횟수, 교육 정원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범위에서 시설의 장이 결정한다.

□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청소년	일 반	
실내집회장	○ 영상장비, 음향장비 사용 ○ 전시, 공연, 기타행사 (1회 2시간)	무료	20,000	※ 초과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 퍼센트 가산징수
	○ 냉·난방시설 (1회 2시간)	무료	20,000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할 동장)	○ 1회 2시간	무료	20,000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기존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선언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생략함.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